

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시행령 제1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을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식량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은 비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모든 작물의 재배로 인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곡물 및 기타작물재배업의 경우는 비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법 제197조>

제197조(定義) 이 절에서 “農業所得”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農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物(이하 이 절에서 “作物”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납세의무자 등 - 법제198조, 영제148조

납세의무자는 종전 농지세에서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로 하던 것을 농업소득세에서는 “농업소득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농업소득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였으며, 농지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¹⁹⁾하였다.

○ 과세기간 - 법제199조

농업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종전과 같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종전의 농지세에서는 농지세 通則 뒷부분에 있던 조문을 앞부분으로 이동하여 정리하였다.

○ 농업소득세 비과세 - 법제200조 내지 제203조, 영제150조, 규칙제83조

농업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세 비과세 규정과 같으나,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도 비과세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농업소득세 비과세신

19) 농지임대소득은 농지를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농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며, 국세인 소득세(임대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